

현장조사 안전매뉴얼



2015. 12.



통계청도서관



B00131823

통계청
STATISTICS KOREA





Contents

● 안전과 사고의 이해	3
I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사항	4
II 안전사고 예방법	6
III 안전사고 비상 수칙	8
IV 조사 대상처에서의 안전수칙	10
V 현장조사 직원 보험 가입	13
VI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14
VII 안전사고 관련 재해보상 처리절차	15
VI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18



안전과 사고의 이해

1 안전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안전'

- ⊙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일반적 의미의 '안전'

- ⊙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

2 사고의 개념과 원인

사고의 개념

- ⊙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뜻함

사고의 원인

- ⊙ (인적 요인) 연령, 성별 특성, 태도 및 심리적인 상태, 행동특성 등
- ⊙ (물적 요인) 비행기 엔진 고장, 자동차 기계적 결함 등
- ⊙ (환경적 요인) 도로 사정, 날씨 등



I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사항

1 안전용품 및 조사용품 준비

- 조사 전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및 조사용품을 철저히 준비



2 담당조사구 확인

- 조사구의 지형, 주택 배치 형태, 개 사육 여부, 교통량,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을 확인



3 방문위험지역 사전 파악

시골지역의 경우

- 이장을 통해 남자 독거가구, 남자들만 사는 가구, 마을에서 동떨어진 가구(가축농장, 개 사육장 등) 등 위험우려 지역 사전 파악
- 가급적 야간조사를 피하고, 부득이 야간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장이나 마을 자율 방범대 등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여 조사 실시



도시지역의 경우

- 경찰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해 범죄 발생 및 우려지역 등을 미리 확인, 특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남자 독거 가구는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 실시



4 비상연락처 확보

- ▶ 조사 중 긴급 상황 발생 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 (사무실, 인근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 메모, 필요시 즉시 연락
- ▶ 개인 휴대폰에 비상연락처 입력



5 본인 일정 공유

- ▶ 조사 당일 방문 일정을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림
 - ⦿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알리고, 야간 조사 시에는 당직자에게도 사전에 일정을 알림



6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및 신발 착용

- ▶ 조사활동에 적합한 의상과 신발 착용
- ▶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친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마크) 부착은 피하도록 함



〈 올바른 복장 〉



II

안전사고 예방법

1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 주의

- ❑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 등에 주의
- ❑ 급한 경우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의하며, 비가 올 때나 야간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 ❑ 계단이 많은 지역이나 비오는 날은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 착용을 피하여 계단에서 넘어짐 예방



2 개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 개를 기르는지, 개가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개 줄의 길이 등을 확인
 - ⊙ 개를 기르고 있는 곳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열 때에도 주의함
- ❑ 불필요하게 개를 만지는 행위 삼가
 - ⊙ 개는 본능적으로 무는 습성이 있으므로, 주인과 함께 있어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해야 함



3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 ▶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피하고, 우천 시에는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
- ▶ 차량 이용 시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나 좁은 골목, 야간 및 우천 시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함
- ▶ 저녁 및 야간조사는 특별히 주의
 - ▶ 저녁 무렵은 주위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 ▶ 부득이 야간조사를 하게 될 경우 어두운 색의 복장은 피하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복장 착용



4 벌 쏘임, 벌레·뱀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 야외 조사 시 긴 소매 옷 착용, 화려한 색의 옷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
- ▶ 장화, 작업화,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 최소화
- ▶ 향수나 스프레이와 같은 향이 강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5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 조사관련 서류(조사표, 가구명부, 답례품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휴대하고, 특히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주의를 기울임(날치기 주의)



III

안전사고 비상 수칙

1 상대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대의 동작에 주의

- 면접조사를 할 때에는 응답자와 일정한 간격 유지
- 면접 중에 상대방의 태도 또는 동작을 잘 살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날짜를 바꾸어 방문



2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조사 시에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분명한 말로 조사를 진행하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삼가
-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잠시 외출 중인 집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3 불안을 느낄 때에는 되돌아 가도록 함

- 노숙자, 정신 이상자,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면접 도중 불안을 느낄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 가도록 함



4 신체 위협과 불안을 느낄 경우 큰 소리로 도움 요청

- 갑자기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불이야” 등 큰 소리를 여러 번 외쳐서 주변에 위험 발생을 알리고, 즉시 경찰서 및 사무실 등에 연락함
- 안전용품으로 지급된 호신용 경보기를 울리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림
 - 호신용 경보기와 스프레이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복 주머니에 넣어 두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조사 시 관리인에게 알림

- ①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협조 요청을 통해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이 방문하게 됨 알림

❏ 조사 수행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 ① 조사 수행 이외의 방문판매 행위나 종교활동, 사회 단체활동 등을 하여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절대 안됨



2 사업체 방문 시 안전수칙

❏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 ①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는 가동 중인 기계, 쌓아올린 자재, 위험한약품류 등이 있으므로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조사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① 방문하는 사업체가 혼잡한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피하도록 하고, 개점 전 등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방문



3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상처에 대한 단계별 안전대책

1단계) 면접조사를 비대면조사로 대체

- ⊗ (대체사유) 대상처 방문으로 조사직원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 ⊗ (대체절차) 소속 부서장 서면보고 및 결재 후 조사담당 실사과에 통보

2단계) 표본 대상처 교체

- ⊗ (교체사유)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상처에 대해 비대면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등
- ⊗ (교체절차)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표본과에 교체 요청

3단계) 2인 1조 동행 출장

- ⊗ (전제조건)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비대면조사 또는 표본교체가 불가능한 대상처에 대해 부득이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
 - ▶ 2인 1조 동행 출장 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직원 부담을 고려하여 실시
- ⊗ (운영방법) 2인 1조 동행 출장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청(사무소)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경찰관의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 필요
 - ▶ 범죄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고위험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경찰관이나 남자 직원과 2인 1조로 동행 출장



1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 **가입보험종류**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 ▶ 단체보험가입 결정된 상품은 전 직원 필수 가입
 - ▶ 단, 본인입원의료비, 본인통원의료비, 가족(배우자, 자녀) 입원의료비, 가족(배우자, 자녀) 입원의료비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
- ▶ **가입대상자** :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2 근로계약 조사원

- ▶ **가입보험종류**
 - ▶ 1개월 이상 :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 ▶ 1개월 미만 : 산재·고용보험
- ▶ **가입대상자** : 무기계약근로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3 도급계약 조사원

- ▶ **가입보험종류** : 일반 상해보험 등 1인 1보험 의무가입
- ▶ **가입대상자** : 조사원
 - ▶ 도급계약으로 수급자(조사원) 부담으로 계약체결, 계약기간 동안 기존 보험사에 가입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입 불필요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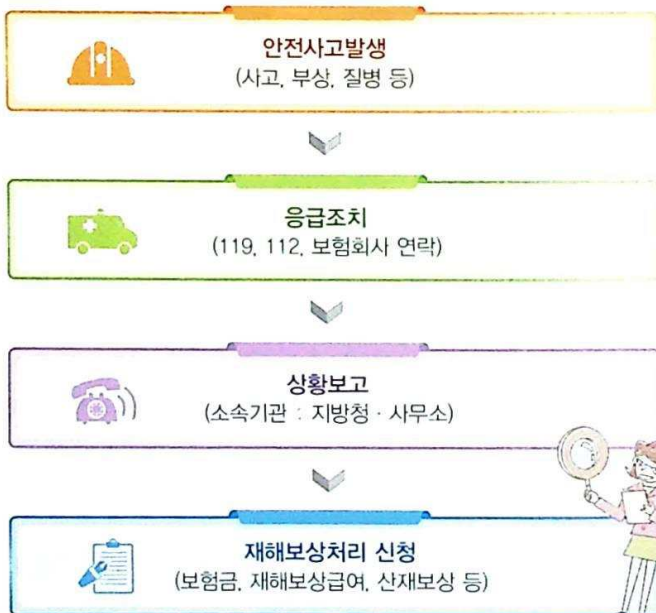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1 사고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 ❖ 사고나 부상 시에는 즉시, 사고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 (119, 112, 보험회사 등에 연락) 실시
- ❖ 사고 발생 상황(일시, 장소, 부상정도 등)을 본인 소속기관 (지방청·사무소)에 신속하게 보고
 - ※ 사고 및 부상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및 조치



2 안전사고 처리절차



VII

안전사고 관련 재해보상 처리절차

1 공무원

재해보상금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장애·사망하였을 때 국가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

재해보상 처리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발생 유형별 지급액



부상·질병

- 공무상요양비
 - 실제 요양기간 범위 내 지급

장애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확정 및 퇴직시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보상금 지급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 지급
 -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중 본인 선택

사망

- 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 소득월세의 23.4배 지급
- 공무상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 소득월액의 26%(20년미만) 또는 32.5%(20년이상) 지급
 - ※ 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중 본인 선택

세부 처리절차

청구인

- 소속기관(통계청)에 재해보상금여 지급 청구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장해급여청구, 유족보상금청구 등

연금취급기관
소속기관(통계청)

- 급여유형별 구비서류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서 이송
 - 상병, 장애, 사망경위조사서 등 작성하여 첨부

공단

- 공무상재해 승인여부 결정 및 급여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홈페이지 참조

2

근로계약 조사원(무기계약근로자, 연간·특별조사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

▣ 산재보상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세부 처리절차



- ① (1단계) 재해 당사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사업장(지방청·사무소)에 각각 제출
- ②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요양 승인여부를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병원에 각각 통지하게 됨
- ③ (3단계) 업무상 재해 승인이 확정되면 재해 당사자는 휴업급여와 산재 장애 등급에 따라 간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휴업급여 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보상의 종류

구분	지급 기준
요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는 병원비를 말하며, 산재승인이 확정되면 병원비에 대해 실비로 지급 • 부상정도와 치료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음
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애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간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애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

※ 산재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3 도급계약 조사원 (연간·특별조사 조사원)

- ❖ 보험금 청구 범위 : 조사업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 ❖ 보험 처리기관 : 조사원이 가입한 일반 보험사
- ❖ 세부 처리절차
 - Ⓧ (1단계) 입원이나 통원치료 후 치료비 지급내역 확보
 - Ⓧ (2단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비 영수증과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MRI, CT, 의사 소견서 등) 진료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험사로 통보



4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자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 보험금 청구 범위 : 매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 ❖ 보험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 통합 공무원단체보험 계약 체결 보험사
 - ❖ 세부 처리절차
 - Ⓧ (1단계) 입원이나 통원치료 후 치료비 지급내역 확보
 - Ⓧ (2단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비 영수증과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MRI, CT, 의사 소견서 등) 진료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험사로 통보
- ※ • 재해보상급여, 산재보험 및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공상 처리 시(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 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므로 하므로 보험약관 확인 및 보험금 청구처에 반드시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처은 단체보험 관련 문서 및 UBIS 게시판(단체보험안내) 참조



VI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1 긴급전화번호 안내

긴급전화번호

전화번호	접수 내용	상세 내용
112	범죄신고	· 신속한 범죄 신고 및 출동 관련
119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응급의료·병원 정보	· 소방·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 신고 · 18개 시·도 소방본부 또는 중앙 119 구조대로 내용 전달
1366	여성긴급전화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 24시간 Hot-line 운영
182	경찰민원상담	· 각종 경찰서 관련 문의 및 민원

※ 응급의료정보 상담·안내번호 1339는 119로 통합·일원화 됨

특수번호

전화번호	접수 내용	전화번호	접수 내용
111	안보상담신고(구113)	118	사이버테러
122	해양 긴급 신고	125	말수 사범 신고
1301	마약·범죄종합신고	1337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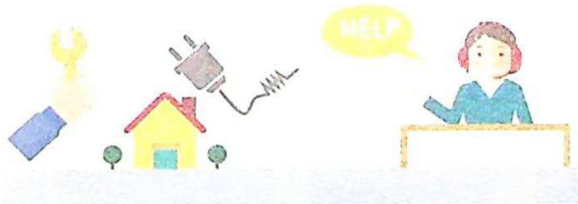


생활정보

전화번호	접수 내용	전화번호	접수 내용
114	전화번호 안내	116	표준 시각 안내
120	생활민원센터	02-120 032-120 031-120 051-120	서울 다산콜센터 인천 미추홀콜센터 경기 경기도콜센터 부산 바로콜센터
131	일기예보 안내	1333	교통정보안내

공공·민원안내

전화번호	접수 내용	전화번호	접수 내용
110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121	수고 고장 신고
123	전기 고장 신고	132	법률 상담
1544-4500	가스 사고 신고	1331	인권침해 상담
118	개인정보침해 상담	1398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1399	부징 불량식품 신고	1588-7500	전기 안전 상담



2 SOS 국민안심 서비스

서비스 개요

- ②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 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



가입대상

- ②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

가입 방법 및 사용법

- ② (원터치SOS)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입한 후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 112를 사용하기 편리한 단축번호로 저장

* 위기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 ④ (112긴급신고앱) 통신사별 앱 마켓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112긴급신고 앱을 다운로드 하여 본인 인증 후 가입

* 위기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 ④ 112긴급신고 앱 주요 화면



3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서비스 개요

-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가입 방법 및 사용법

-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이용
- * 통신사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주요 서비스 내용

- ① 스마트안전귀가 : 통학 및 귀가 등 이동 및 경로 이탈 시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
- ② 스마트안전구역 : 안전구역을 벗어나거나 위험지역 진입 시, 보호자에게 제공
- ③ 생활안전시설 : 24시간 혹은 휴일 운영 중인 병의원 등 주위의 안전시설정보 제공



- ② 앱 사용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능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지역에 근접하면 벨이나 진동으로 알려줌
- ② 휴일 영업 중인 약국이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정보 및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

스마트 안전귀가 주요 화면

- ②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시작



< 시작화면 >



< 메인화면 >



< 목적지 검색 >



< 안전서비스 실행 >

- ② 예약 등록



< 설정에 서비스 알람목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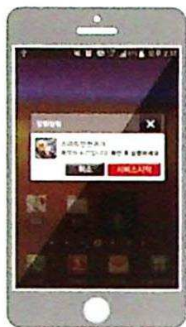


< 알람별 설정정보 조회 >



< 예약 등록 화면 >

예약기능 흐름



〈 예약 시간에 알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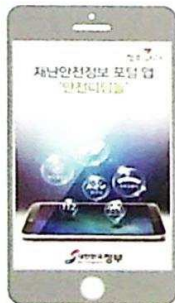
〈 서비스 바로 시작 화면 〉



4 정부대표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서비스 개요

- ▶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알리미'를 기반으로 11개 기관별로 운영 중인 15개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합·연계한 재난안전정보 맞춤형 서비스
- ▶ 재난문자와 재난 뉴스를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 제공
- ▶ 119, 112 긴급신고 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병원, 약국, 대기오염 등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 안전디딤돌 주요 화면



< 재난안전 콘텐츠 맞춤 설정 >



< 국민행동요령 즐거찾기 >



< 재난문자 수신/재난문자 >



< 119, 112, 122 재난신고도 앱으로 빠르게 >



경찰서 업무 형조 공문 예시

▣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협조 공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계청에서는 국가의 각종 정책입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계획수립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국가 기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의 사생활보호 의식의 확산, 1인·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조사 환경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및 공장밀집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및 노숙자 거주지역 등에서 조사직원의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지방청(사무소)의 관할 경찰서인 귀 기관에 통계청 조사직원이 위험한 조사대상처 방문 시 동행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소속 경찰관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통하여 통계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통계청 통계조사 소개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지구대)와 부서장간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 협조에 관해 사전에 협의한 후 공문 발송 요망





현장조사 안전매뉴얼